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능력개발 운영 규정

(제정) 2013-07-01 규정 제328호

(개정) 2013-09-23 규정 제339호

(개정) 2013-11-06 규정 제341호

(전부개정) 2014-03-31 규정 제352호

(개정) 2016-04-25 규정 제39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전임교원이 국내·외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술연구와 학문발전 등 능력개발을 하는데 필요한 연구학기·교환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5.>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의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능력개발 교원’이라 함은 “연구학기 교원”과 “교환교수”를 말한다.
2. ‘연구학기’이라 함은 본 대학교에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연구력 향상과 학문발전에 공헌하도록 직무 또는 복무 의무가 면제되는 일정기간을 말한다.<개정 2016.4.25.>
3. ‘연구학기 교원’이라 함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이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학기 신청을 하고 허가(파견)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4.25.>
4. ‘교환교수’라 함은 다른 대학(국내 소재 대학에 한한다.) 전임교원과의 교환 근무를 통해 다른 대학에서 연구, 강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신청자격) 능력개발 대상 교원은 본교에서 근무년수(휴직기간 제외)가 5년 이상이고, 능력개발 교원 개시일 기준 정년까지 재직 잔여년수가 3년 이상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기간) 능력개발 기간은 6개월로 하며, 시작 시기는 3월 1일 또는 9월 1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작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허가절차) ① 능력개발 대상 교원이 되고자 하는 교원은 능력개발 시작시기 3개월 이전에 ‘능력개발 교원 신청서’ (별지1호 서식)를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② 교학처장은 ‘능력개발 교원 추천서’ (별지2호, 별지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6.4.25.>

③ 총장은 선발기준에 의거 개시 2개월 전까지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④ 능력개발 교원이 신청서 제출 시 작성된 계획서 등을 특별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능력개발 계획 변경신청서’ (별지3호, 별지3-1호 서식)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25.>

제7조(인원의 제한) 능력개발 교원의 수는 학기별 1명(교환교수 인원 산정 제외) 이내로 한다.

제8조(선발기준) ① 능력개발 교원이 경합이 있는 경우 100점을 만점으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항목별 배점

심사항목	교수업적평가 (최근3년 평균)	본 대학교 근무경력	합 계
배 점	50점	50점	100점

<개정 2016.4.25.>

2. 항목별 심사방법

가. 교수업적평가

교수업적평가점수 (최근3년 평균)	60이상 ~ 80미만	80이상 ~ 85미만	85이상 ~ 90미만	90이상 ~ 95미만	95이상
배 점	30점	35점	40점	45점	50점

나. 본 대학교 근무경력

본 대학교 근무경력	5년	5년초과	비 고
배 점	30점(기본)	-기본점수에 매년1점씩 가산(최고50점) ※근무년수 산정시 월단위 절사함.	

<개정 2016.4.25.>

② 총점이 동점일 경우 본 대학교 근무경력 점수, 교수업적평가 평균 점수의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2016.4.25.>

제9조(신분 및 처우) ① 능력개발 교원은 능력개발 기간 중에 본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개정 2016.4.25.>

② 능력개발 기간 중에는 평상 근무 시의 보수와 체수당을 전액 지급 받으며, 그 기간 중에 승진 및 승급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0조(선발의 제한) 능력개발 교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능력개발 교원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국내외 출장, 파견연수를 한 교원
2. 징계처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3. 능력개발 교원에 선발된 후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교원

4. 기타 학과운영상 심각한 지장이 있는 때

제11조(의무) ① 능력개발 교원은 기간 중에 타 대학이나 교육기관에 정기적인 출강을 할 수 없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용역의 대가를 받고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전문분야와 관련된 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에서의 연구활동은 제한하지 않는다.

② 능력개발 교원은 특별한 사정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능력개발 기간 종료 후 즉시 대학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능력개발 교원은 능력개발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귀보고서'(별지4호 서식)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능력개발 교원은 능력개발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5호 서식)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대한 '능력개발 실적물 보고서'(별지6호 서식)를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연구 :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1부와 별쇄본 1부.

2. 저술연구 : 출판된 저서 1권

3. 발표연구 : 발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부(예능 계열 교원에 한함)

⑤ 능력개발 종류에 따른 실적물은 다음 각 호 이상이어야 한다.

1. 논문연구 : 전국규모학회학술지 이상

2. 저술연구 : 전문분야 저서(ISBN필수, 개정판 불인정)

3. 발표연구 : 국제전, 국전, 상공전, 공인된 개인전

⑥ 능력개발 교원은 능력개발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13. 7. 1)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9. 23)

(시 행 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3년도 하반기 연구년교원 시행은 제6조(신청 및 허가절차) 제①항,

제③항 및 제10조(선발의 제한)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13. 11. 6)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3년도 하반기 연구년교원 시행에 한하여 제4조(신청자격)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부 칙(2014.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 「강원도립대학 교원 연구년제 운영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된 사람은 제4조(신청자격)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따라 임용제청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4. 25.)

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개정 2016.4.25.〉

능력개발 교원 신청서

학 과 명 (소속)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전공분야		
최초임용일	. . . (현직급:)	전화번호		
신청구분 (V)	연구학기 교원	()	장 소 (V)	국내() 국외()
	교환교수	()	기 관 명 (대학교명)	

종 류 (V)	논문연구 ()	저술연구 ()	발표연구 ()	기 타 ()
논문연구	(국문명)			
	(영문명)			
저술연구	(국문명)			
	(영문명)			
발표연구	“생략” 불임의 능력개발 계획서 참조			
※ 교환교수는 대학간 상호 교류협약에 따른 업무수행계획서 첨부				

(소속학과 교원) 능력개발 기간 직무대행 동의				
직 급				
성 명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 붙 임 : 1. 능력개발(업무수행) 계획서. 1부.(별지1-1호서식)
 2. 능력개발 수행기관(대학 등) 동의서. 1부.
 3. 초청장(번역문). 1부.(해당자에 한함.)

상기 본인은 강원도립대학교 능력개발 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능력개발 교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학과장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1-1호 서식〉

능력개발(업무수행) 계획서

○제출일 : 년 월 일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서명/인)

1. 목적 및 필요성
2. 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월별 추진일정(요약)
5. 기타 수행사항

〈별지 2호 서식〉〈개정 2016.4.25.〉

능력개발(연구학기) 교원 추천서

연 번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연구종류	연구 기간 (개월)	연 구 과 제 명	항목별 심사점수			추천 순위
							교수업적 평가점수 (50)	근무경력 점 수 (50)	합 계 (100점)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 : 1순위: 본대학교 근무경력 점수, 2순위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

강원도립대학교 능력개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선발기준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연구학기 교원을 추천합니다.

추 천 일 : 년 월 일

교학처장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2-1호 서식〉〈개정 2016.4.25.〉

능력개발(교환교수) 교원 추천서

연 번	학 과 명	직 급	성 명	기 관 명 (대학)	교류기간 (개월)	주 요 업 무 (요약)	항목별 심사점수			추천 순위
							교수업적 평가점수 (50)	근무경력 점 수 (50)	합 계 (100점)	

※동점자 순위결정 기준 : 1순위: 본대학교 근무경력 점수, 2순위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

강원도립대학교 능력개발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선발기준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이 교환교수로 추천합니다.

추 천 일 : 년 월 일

교학처장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6.4.25.〉

능력개발 계획 변경 신청서

학 과 명 (소속)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전공분야		
최초임용일	. . . (현직급:)		전화번호		
신청구분 (V)	연구학기 교원	()	장 소 (V)	국내()	국외()
	교환교수	()	기 관 명 (대학교명)		

종 류	논문연구	저술연구	발표연구	기 타
(V)	()	()	()	()

변경사유		
연 구 명 (변경 전)	(국문명)	
	(영문명)	
연 구 명 (변경 후)	(국문명)	
	(영문명)	

붙 임 : 능력개발(업무수행) 변경 계획서. 1부.(별지3-1호 서식)

상기 본인은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능력개발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의거하여 능력개발(업무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학과장 : (서명/인)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3-1호 서식〉

능력개발(업무수행) 변경 계획서

○제출일 : 년 월 일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서명/인)

1. 목적 및 필요성
2. 내용 및 방법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월별 추진일정(요약)
5. 기타 수행사항

〈별지 4호 서식〉〈개정 2016.4.25.〉

복 귀 보 고 서

○제출일 : 년 월 일

학 과 명 (소속)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전공분야		
최초임용일	. . . (현직급:)		전화번호		
신청구분 (V)	연구학기 교원	()	장 소 (V)	국내()	국외()
	교환교수	()	기 관 명 (대학명)		

종 류	논문연구	저술연구	발표연구	기 타
(V)	()	()	()	()

1. 주요실적 및 내용(요약)
2. 월별 추진내용(요약)
3.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결 과 보 고 서

○제출일 : 년 월 일

학 과 명 (소속)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전공분야		
최초임용일	. . . (현직급:)		전화번호		
신청구분 (V)	연구학기 교원	()	장 소 (V)	국내()	국외()
	교환교수	()	기 관 명 (대학명)		

종 류 (V)	논문연구	저술연구	발표연구	기 타
	()	()	()	()
연구과제 명	(국문명)			
	(영문명)			

1. 실적 및 내용	
2. 세부내용	
3.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6호 서식〉〈개정 2016.4.25.〉

능력개발 실적물 제출보고서

○제출일 : 년 월 일

연구자	학 과 명		직 급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전공분야		
	최초임용일		전화번호		
	주 소				
기 간	. . . ~ . . . (개월)		연구장소 (V)	국 내	국 외
				()	()

연구종류 (V)	논문연구		저술연구	발표연구
	()		()	()
연구과제명	(국문명)			
	(영문명)			

연구실적(개요)				
논 문	게재지명			
	게재일자		발행기관	
저 서	저 서 명			
	공동저자		발 행 처	
발 표 (전시회)	행 사 명		기 간	
	주최•주관		작 품 수	
	장 소			

붙 임 : 능력개발 실적물. 1부. 끝.

강원도립대학교 전임교원 능력개발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능력개발 실적물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귀하